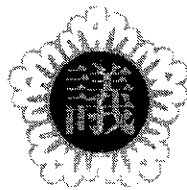


2004.9.13~9.20
제231회임시회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만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4년 9월 7일

나. 회부일자 : 2004년 9월 7일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4.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나.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회단체장에게 통보(안 제8조 및 제9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을 과반수가 되도록함(안 제10조)

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시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안 제17조)

5. 검토의견

- 가.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중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 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지원하던 것으로 2003년도까지는 13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별하여 지원하였으나,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단체등에서 임의보조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여
- 다. 2004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ceiling)를 도입하여 지원하여 왔음.
- 라.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마. 다만, 제16조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지난 6월 11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조례 제2805호)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바. 제8조에 "도지사는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라고 하였는 바 조정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위원회의 기능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와 위원회는 안건의 가부결정이나 수정·권고에 그치는지 또는 결정된 사안에 대한 구속력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